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7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나175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1가단1285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18.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1가단12855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E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640,7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880,25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2행의 ‘2020. 8. 37.’을 ‘2020. 8. 27.’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4쪽 21행부터 5쪽 4행까지에 정리된 피고들의 주장을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들은, E가 2018. 10. 9.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상속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일 뿐, 그 아들 P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은행 대출 없이 2020. 12. 15. 인천 서구 Q, R호를 630,000,000원에 매수하며 S식당 지점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드러내며 생활해 온 E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새해행위를 한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박성규, 판사 설정은